



제428 회국회(임시회)
제1 차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인 간병비용 지원 관련 자치입법권 확대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9092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노인 간병비용 지원 관련 자치입법권 확대	2

I . 개요

1. 정부안(의안번호 제909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5. 3. 19.
- (3) 회 부 일 : 2025. 3.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하여 간병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노인 간병비용 지원 관련 자치입법권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①·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업인</u> 가구에 대해서는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저소득층</u> ----- ----- ----- <u>보건복지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 지원, 재활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병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 한편, 대통령령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제3항에 따른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간병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요양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²⁾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것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또는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 지원, 재활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해서는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요양지원의 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이란 농어촌의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제1항³⁾ 및 「지방자치법」 제28조⁴⁾에 따라 별도의 법률 근거 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은 조례 제정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제정의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여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또한, 지역마다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의 기준이나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원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보건복지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법 제25조제1항⁵⁾에서는 이와 유사한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 지원, 재활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다만,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범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원사업의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 기존과 같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노인 간병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한 간병비용 등의 지원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

문 의 처

02)6788-5497
